

의안번호	2214415
의 퇴 인	이만희 의원
회 답 일	2026. 4. 17.
추계번호	25B638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신설	쌀가공사업자는 쌀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2조(자조금의 적립지원)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원료 등의 공동구매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4조(보조금의 지급 등) 신설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1항)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쌀가공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다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1	안 제11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조(자조금의 적립지원) 신설	
3	안 제14조(보조금의 지급 등) 신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 그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 및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쌀가공사업자¹⁾에 대하여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융자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자격: ①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②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③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 지원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구매자금
 - 지원조건: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구매자금 연 2.5%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 시행령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표 3] 쌀가공산업육성지원 현황: 2021~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용자규모		50,000	50,000	50,000	35,000	35,000	30,000
실적	지원개소	31	23	38	29	45	—
	지원금액 (용자)	19,647	12,395	38,167	26,475	34,30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

[참고자료] 쌀가공사업자단체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쌀가공사업자단체 현황

- 단 체 명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설립일자 : 1993.7.1.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협 회 장 : 박병찬(성찬식품 대표)
- 조 직 : 1국(사무국), 4본부(기획관리본부, 사업본부, 대외본부, 운영지원실), 7팀(기획관리팀, 원료조달팀, 식품수출진흥팀, 회원관리팀, 홍보팀, 운영지원팀, 글루텐프리인증원, 쌀가공식품수출협의회)
- 임 직 원 : 16명
- 회 원 사 : 5,340개사(식품제조업 951, 즉석판매제조업 4,389)

구분	떡면류	쌀과자	쌀가루	주류	조미식품	가공밥류	기타
식품제조업	335	207	66	178	34	42	89
즉석판매제조업	4,389						

- 설립 목적
 - 우수한 쌀 가공식품 개발·보급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 및 건강 증진
 - 새로운 쌀 수요창출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
 -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권익 증진
- 주요 업무
 - 쌀가공식품 소비홍보 및 수출촉진 등을 통한 쌀의 새로운 수요창출
 -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 운영·관리
 -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운영,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 쌀가공식품 수출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
 - 글루텐프리 단체표준 인증기관 운영
 - 쌀가공식품 제조업 통계조사(통계청 통계작성기관)
 - 쌀가공식품에 관한 국제교류 및 세미나 등 개최 등